

1. 개정이유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서 및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절차 마련(안 제129조의4)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하려는 사람이 요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변조, 전산시스템 입력 오류 등 정정 또는 말소가 가능한 사유를 정하며, 제출된 자료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관련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4호의9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10서식)

운전자가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원활하게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와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사용하는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4(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절차 등) ① 법 제137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이하 “운전자 정보”라 한다)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하려는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9서식의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이 조에서 “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7조제5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의도용, 신분증의 위조·변조 등으로 타인의 운전자 정보가 본인의 정보로 등록된 경우
2.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입력 오류, 기관 간 정보 연계 오류 또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운전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기록된 사고·위반에 대한 사실관계의 오인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운전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처리기관은 제출된 증빙자료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운전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처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운전자 정보 확인 결과 운전자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4호의10서식의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운전자 정보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운전면허 정보이거나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

2. 별지 제56호서식 중 운전면허 종별 및 발급 관련 정보

별지 제144호의9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구분	정정	말소	기 타
정정·말소 대상	교통사고	법규위반	기 타
정정·말소 사유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4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자 정보 (정정 · 말소)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첨부서류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1호~4호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민원실 접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
		적·부 판정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
			결과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

문서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정정·말소 요청내용					
처리결과	승인 (정정·말소처리 완료)		불승인 (정정·말소 불가)		기 타
불승인 사유					
처리내용	정정·말소 항목				
	기존 기재내용				
	변경(정정) 내용				
	변경일자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4의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직인

안내사항

-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 관련 사실 및 행정기록을 확인하여 발급되는 증명서로서 기록의 정정 또는 말소는 객관적인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9조의4(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절차 등) ① 법 제137조제5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이하 “운전자 정보”라 한다)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하려는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9서식의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이 조에서 “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7조제5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의도용, 신분증의 위조·변조 등으로 타인의 운전자 정보가 본인의 정보로 등록된 경우		

	<u>2.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입력 오류, 기관 간 정보 연계 오류 또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운전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u> <u>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운전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것이 확인된 경우</u>
	<u>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처리기관은 제출된 증빙자료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운전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④ 처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운전자 정보 확인 결과 운전자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4호의10서식의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로 신청인</u>

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운전자 정보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운전면허 정보이거나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

2. 별지 제56호서식 중 운전면허 종별 및 발급 관련 정보

<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